제9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시행 공고

「목재이용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위탁기관이며 자격시험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목재문화진흥회장

평가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5년 제9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 시험일자: '25. 2. 22.(토)

■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 204~205호

■ 시험시간: 90분, 15:00~16:30(입실시간 14:00~)

		평가시험					
과정	입실	안내 및 신분 증 확인	시험 시간	시험 과목	문 형	문항 수	배 점
목재교육	14:00	14:30	15:00	① 목재교육 1론	선택형	각 과목	각 과목
	~	~	16:30	② 목재교육실무	(4지 택1)	25문항	100점
전문과정	14:30	15:00	(90분)	③ 목재교육방법론	(4시 넥1)	(총 75문항)	(문항당 4점)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시험문제: 비공개 (※단, 시험의 답안은 공개--> 참조)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필기구, 손목시계, 일반계산기(선택)

【신분증 인정범위】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 ⑥ 국가기술 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⑪ 전자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원서접수 ■ 응시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교육시간 8할 이상 출석한 자(※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 **□ 접수기**간: '25. 1. 23.(목) ~ 2. 12.(수) ☐ 접수방법: 목재정보서비스 마이페이지(https://winz.forest.go.kr/) □ 응시 수수료: 없음 **단,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수수료: 17,000원(산림청 고시 제2022-16호) □ 수 험 표: 원서접수 완료 후 목재정보서비스 출력 가능(출력하여 지참) 가답안·최종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기간: '25. 2. 22.(토) ~ 3. 1.(토) ※ 신청방법: 목재문화진흥회 이메일 접수(woodedu@kawc.or.kr) (*기간 내 신청분만 처리) ※ 평가시험 시 가답안 작성 용지를 별도 제공 * 가답안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별적 회신 없이 최종답안 발표로 갈음함 **▲ 최종답안 공개기간** : '25. 3. 5.(수) ※ 가답안 및 최종답안의 형태는 문항에 대한 답 번호만 공개

Ⅳ 합격자 발표

- □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합격자 발표일(예정): '25. 3. 5.(수), 목재정보서비스 공지 및 개별 문자 알림
 - ※ 홈페이지 주소: https://winz.forest.go.kr/
 - ※ 산림청 및 양성기관 공문 발송
- 문의처: 목재문화진흥회 교육사업실 02-3463-9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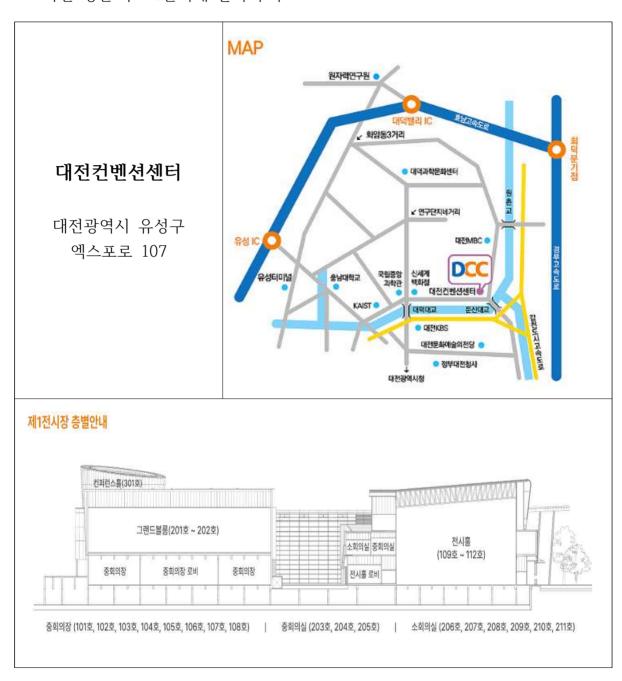
Ⅵ 장애인 등 편의 제공 관련

-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 제공 사항을 사전에 문의 요망
- * 배변 장애 등 불가피하게 허가된 시간 이외에 화장실 이용을 요청한 응시자는 시험일 후(또는 사전)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Ⅵ 수험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 사진은 6개월 이내 반명함판(3×4cm) 컬러사진만 가능합니다.
 - *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스냅사진, 선글라스, 측면사진 등 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의 누락·오류·착오·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준비물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당일 15:00 시험 시작 이후 시험장 접수처 도착자는 결시 처리됩니다. 좌석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시간 동안에는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협조 바랍니다.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의 사용만 가능하며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기를 시험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답안 작성은 시험감독관이 제공하는 별도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문제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용지에는 **답 번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시험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이후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안내 대전컨벤션센터
- ※ 주차료 1일당 5,000원 (매 30분마다 500원)
- ※ 사전 정산 후 15분이내 출차시 무료



붙임 1

출제범위(표준교재 등)

※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 등 문항출제 목적에 따라 표준교재 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부분정합」 의 형태로 출제될 수 있음

시험과목	대항목	양성과정 교과목	세부내용							
목재교육 개론		정책과 제도 (우리나라 산림과 정책)	 우리나라 산림 및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 식생 및 생태적 특징, 산림자원 현황에 대한 이해 산림정책 주요 성과 및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목재교육	정책과 제도 (목재산업 정책)	·목재산업 현황 ·목재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							
	입문	산림과 목재 (산림과 목재의 가치)	· 산림의 공익적 가치 · 목재의 환경적 가치							
		목재와 문화	·목재의 사용 기원·건축, 가구와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목재문화의 확산 방안							
	목재교육	목재교육 전문가론	·목재교육전문가의 필요성 ·목재교육과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이해							
	전문가론 일반	목재교육 경영론	·경영의 정의와 이해, 목재교육 기관과 경영 ·목재교육 경영원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목재특성	 ·목재의 식물학적 특성 ·목재의 물리적 특성 ·목재의 기계적 특성 ·목재의 화학적 특성 							
	목재과학	목재가공	 목재절삭과 제재 목재건조 목재접착 목재보존 목재도장 							
		목재이용	·우리나라 주요 수종의 이용특성 ·목재제품의 종류와 이용, 목조건축							

시험과목	대항목	양성과정 교과목	세부내용						
목재교육 실무		제도 기초	·제도의 개요, 도학의 목적, 제도의 실제 ·도면의 구성, 도면의 척도, 제도용구 등						
	제도의 이해	투시도법	・투상도의 개념 이해 ・정투상도, 축측투상도, 사투상도 작도 ・투시투상도법에 대한 이해 및 응용						
		도면의 표시	·도면의 표시방법 이해 ·다양한 도법 및 치수 기입법 이해						
		재단도면계획	•재단도면 목적, 작성법, 계획표 만들기						
		측정 및 표시공구	• 측정공구류, 표시공구류						
		수공구	· 끌, 대패, 톱, 조각도, 우드터닝칼 · 연마석 및 지그류, 작업공구류						
	목재가공실무	전동공구	· 드릴, 직소, 샌더, 트리머, 각도절단기 · 트랙쏘, 도미노, 도웰조이너 등						
		목공기계	·재단 기계(테이블쏘), 밴드쏘, 스크롵쏘 ·드릴프레스, 대패류, 샌더류						
		마감기법	·짜맞춤 기법 종류 및 특징, 제작방법 ·마감목적, 표면처리, 마감작업						
		목재가공실습 I	· 상자, 티슈케이스, 의자 만들기						
	무게기고시스	목재가공실습 II	·짜맞춤 기법 익히기						
	목재가공실습	종합실습	· 상자, 사개상자, 수납장(세로형, 가로형) · 좌탁, 의자, 벤치, 책꽂이 등 제작						
	목재가공안전	작업안전	· 작업안전 지침						
	국세기중안선	실습실 안전	·장비 사용자를 위한 수업 및 안전 지침						

시험과목	대항목	양성과정 교과목	세부내용						
목재교육		목재교육정의	·목재교육의 정의와 성격, 목재교육 유형						
방법론	교육과정	목재교육과정설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양교육의 목재교육						
		교재개발	• 교재의 이해, 목재교육 교재개발 등						
		교육철학	・교육철학의 정의・가치・유형・학자						
	교수・학습	교수・학습모형	·교수학습모형 이해 및 종류						
	- T	실기교육방법론	・실기교육방법론 개요 및 유형						
		직업 및 진로지도	·직업 및 진로지도 정의·활동·원리 ·목재 관련 직업 및 진로지도						
		교수설계의 이해	·교수설계이론의 흐름·소개 ·교수학습과정안 개요 및 작성요령						
	수업	교수매체활용	·교수매체의 속성·기능 ·교수매체 분류와 목재가공매체						
	설계	실습장구성							
		사례 분석	· 공교육 사례 ·목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사례						
		평가관	·교육평가와 평가관 ·교육평가의 기능						
	평가	평가의 절차와 종류	·교육평가의 절차, 종류 ·목재교육 평가도구 ·기능평가, 수행평가, 수업평가 등						
		사례분석	·우드 스피커 만들기 사례 분석						

붙임 2

답안카드(OMR)

			-1		7 ''	_		7 6					0 -1	정	재교육		1 –			대교육			L. /		H교육 ¹	нгн :	_
이 름 시험감독확인							시험감녹확인				mu	_				TOW!	当/				DW.	녹사					
									ж ,	네명			문반	(1)	달 ②	관 ③	0	문번	1	답	란	(4)	문번	(T)	답	란	
													2	1	2	3	4		1	2	3	4	1	①	2	3	4
							3	①	(2)	(3)	(4)	3	①	(2)	3	4	3	①	2	3	(4)						
문제지 형별 기재란					4	1	2	3	(4)	4	①	(2)	3	(4)	4	①	(2)	(3)	(4)								
() ē	4	(A)	ë	B 5	형	_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6	1	2	3	4	6	①	2	3	4	6	1	2	3	4
		(<u>=</u>	! 적	감	정]								7	1	2	3	4	7	1	2	3	4	7	1	2	3	(4)
	0	예시)	하기	크이	기쁘		T						8	1	2	3	4	8	1	2	3	4	8	1	2	3	4
	-	*110-017			10		\dashv						9	1	2	(3)	4	9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0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1	1	2	3	4	11	1	2	3	4
	-	응시	번호	2			싣	j 년	월 일	(예시	: 9007	17)	12	1	2	3	4	12	1	2	3	4	12	1	2	3	4
						ı							13	1	2	3	4	13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4	1	2	3	4	14	1	2	3	4
0	0	0	0	0	0		0	0	0	0	0	0	15	1	2	3	4	15	1	2	3	4	15	1	2	3	4
1	1	1	1	1	1		1	1	1	1	1	1	16	1	2	3	4	16	1	2	3	4	16	1	2	3	4
2	2	2	2	2	2		2	2	2	2	2	2	17	1	2	3	4	17	1	2	3	4	17	1	2	3	4
3	3	3	3	3	3		3	3	3	3	3	3	18	1	2	3	4	18	1	2	3	4	18	1	2	3	(4)
4	4	4	4	4	4		4	4	4	4	4	4	19	1	2	3	4	19	1	2	3	4	19	1	2	3	4
(5)	(5)	(5)	(5)	(5)	(5)		(5)	(5)	(5)	(5)	(5)	(5)	20	1	2	3	4	20	①	2	3	4	20	0	2	3	4
6	6	6	6	6	6		6	6	6	6	6	6	21	1	2	3	(4)	21	0	@	3	4	21	0	2	3	(4)
7	7	7	7	0	7		0	7	7	7	7	0	22	0	2	3	4	22	①	2	3	4	22	1	2	3	4
8	(8)	8	(8)	8	8		8	8	(8)	8	8	8	23	1	2	3	4	23	1	2	3	44	23	1	2	3	4
9	9	9	9	9	9		9	9	9	9	9	9	25	1	2	(3)	(4) (4)	25	①	2	3	4	25	1	2	3	(4)

▶ 수험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기재하고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의 채점은 전산 판독결과에 따르며 문제지 형별 및 답안 란의 마킹누락,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시에는 카드를 새로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채점결과는 수험자의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이외의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답안카드 왼쪽(성명, 수험번호 등)마킹란을 제외한 '답안마킹란'만 수정 가능
- 4. 시험감독 확인이 없는 답안카드는 무효 처리됩니다.
- 5.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험 문제지에도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의 답안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7. 시험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저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제10조의5 제2항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제4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기준>

- 평가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평가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다른 수험자와 교환하는 행위
- 평가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신호 등을 통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영보게 하는 행위
- · 평가시험 중 평가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평가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사전에 평가시험문제를 알고 평가시험을 치른 행위
-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평가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휴대 · 사용하는 행위
-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시험을 치르는 행위

참고1

수험자 부정행위 처리

구 분	내 용
부정행위자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3년간 목재교육 전문과정
처리	평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함
부정행위 유형	 평가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평가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평가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는 행위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신호 등을 통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평가시험 중 평가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평가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사전에 평가시험문제를 알고 평가시험을 치른 행위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수험자가 평가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카메라 펜, 음성파일 변환기(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휴대하는 행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시험감독관이 제공하는 답안카드, 시험지, 가답안 용지를 제외한 곳에 답을 작성 및 표시하는 행위 가답안 용지에 답번호 이외에 단어, 문장 등을 작성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시험을 치르는 행위
	• 타인의 평가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
사후 적발	부정행위자로 처리
처리	• 사전에 평가시험 문제를 알고 평가시험을 치른 행위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